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
| 의안 번호 | 1971 |
|----------|------|

2017년 11월 2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 나. 제출일자 : 2017년 8월 14일
- 다. 회부일자 : 2017년 8월 16일
- 라. 상정결과 : 제27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년 11월 23일, 상정·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안준호 국장)

가. 제안이유

- 서울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익성이 강화된 관광진흥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 서울관광재단의 설립목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재단의 사업, 정관 기재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조부터 제9조)
- 기본재산의 조성, 출연금 교부 및 기금 설치, 운영재원, 수익사업,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0조부터 제15조)
- 업무의 위탁, 지도·감독 및 공무원 파견 등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16조부터 제18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 예산조치 : 협의완료
-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 없음
 -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제외대상
 - (4)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5)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기타

- (1) 입법예고 (2017. 6. 8. ~ 6. 28.) 결과 : 별도 붙임
- (2) 규제심사 결과 : 별도붙임
- (3) 비용추계 등 자료 : 별도붙임
- (4) 부패영향평가결과 : 별도붙임
- (5)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 별도붙임
- (6) 공공갈등진단 결과 : 별도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조례안 개요

동 조례안은 현재의 서울시 관광전담기구인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해산하고 재단형태의 서울관광재단을 신설하기 위해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

나. 재단설립의 타당성 검토

(1) 현 전담기구(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개요

- 서울관광마케팅(주)은 2008년 서울시의 체계적 도시마케팅을 위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고자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제3섹터형(주식회사형) 공기업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설립자본금은 176억 원(서울시 70억, 민간 106억), 주주는 서울시와 민간주주 16개사로 구성되었으며, 2008년 증자를 통해 자본금은 207억 원(서울시 100억, 민간 107억)으로 되었음.

- 외래관광객 유치, 서울 관광·MICE 산업 발전 등 공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 부족으로 인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고 2015년말 기준 자본금의 47.8%인 99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2016년 회사가 민간주주의 주식 매입·소각을 통해 감자(減資)하여 자본금 100억 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출자출연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서울시 지분 100% 주식회사가 되었음.

(2) 현 전담기구에 대한 평가

- 당초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금을 관광진흥사업을 위해 사용한다는 취지로 출발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는 공익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설립 당시 구상한 수익사업, 투자개발사업들이 무산된 바, 매출의 대부분은 서울시 대행사업에서 발생하였음.
- 서울관광마케팅(주)의 수익사업, 투자개발사업의 무산 원인으로 대주주(서울시)와 민간주주간 갈등,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 민간영역 침해 등이 지적되었으며, 관광 분야의 주요한 여러 업종을 망라한 주주 구성으로 인해 회사 설립 시부터 갈등을 자초할 만큼 계획이 면밀하지 못했음.
- 특히 제247회 정례회(2013. 7. 12.)에서 경영수지 적자 개선과 신규사업 추진 환경 마련을 위해 시장 발의로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면세점)을 목적사업에 추가하는 내용이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추가되었으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 서울시 스스로 시내면세점 사업 진출을 포기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주주(서울시)와 경영진의 전략·리더십·비전이 부족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공청회(2017.6.1.)에서 서울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3) 새로운 전담기구 설립의 필요성 여부

- 외래관광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소비지출 감소, 재방문 의향 하락 등 우려스러운 현상으로 인해 관광 품질관리가 중요해지는 등 관광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국관광공사의 원주 이전으로 공백이 생긴 수도권 관광 진흥기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하나,
- 한국관광공사의 원주 이전으로 인해 수도권 관광 진흥기능에 공백이 생겼다는 것은 한국관광공사의 존립목적, 조직구성, 추진사업 및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고,

현 전담기구의 서울 관광 및 MICE 산업 발전 기여도에 대하여 대부분의 이해관계자가 인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행정력을 들여 현 전담기구를 해산하고 유사한 성격의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서울관광 발전의 충분조건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임.

(4) 신설 법인의 형태

- 투자기관(공사·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을 막론하고 공공부문의 조직은 민간기업보다는 정도가 약하지만 시장 통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고, 공익이라는 광범위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비효율적 조직 운영 등 도덕적 해이를 범할 우려가 적지 않으므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을 것임.
- 공익적 목적도 조직의 지속가능성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재무건전성을 확보하여 부실화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은 공공부문 조직이 지속적으로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역시 세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자립 경영을 지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설립을 위해 사업의 적정성, 적정한 사업 수행 방식, 주민·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검토해야 하고, 이것이 행정자치부와 협의 및 의회의 설립 조례 제정 검토·심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임¹⁾.

① 재단과 수익성

- 서울시는 관광전담기구를 출연기관인 재단으로 설립하면 “수익 지향에서 벗어나 관광진흥기능에 집중”할 수 있고, “출연기관은 수익성이 아닌 공익성을 추구하는 기관”이라 하여 마치 출연기

1)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행정자치부 2016.4.)

관은 수익성의 부담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 「출자출연법」 제30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연기관에 대해서도 매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고,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제78조의3(부실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와 같은 취지라 할 수 있으므로,

공사·공단(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재단(출연기관)이라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한 수익성의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하략)

제30조(경영진단의 실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설립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기관운영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
2.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다른 법률에 결손금 등의 보전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

(중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경영진단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성과급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상 조치
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
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
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하략)

② 재단설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행정자치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 따라 행정자치부와의 협의를 위해 제출된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계획 (2017.4.)”에 따르면,

재단으로 전환하고 예산사업과 함께 (i) 관광패스, (ii) 서울관광 웹사이트 등 플랫폼 활용 광고 유치, (iii) 남산 예장자락 공원화 계획과 연계한 수익사업, (iv) 외국인 관광택시 운영, (v) 서울시 주요 컨벤션시설 직접 운영 등 수익사업을 통해 주식회사 체재 대비 5년간 21억 7천만원 내지 58억 1천만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예상했으며, 비용편익비율(B/C)은 1.67로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한다고 하였음.

〈표 1〉 설립 후 5년간 재정수지 전망²⁾

| 구 분 | 5년간 당기순손익 | 주식회사 체재 대비 재정효과 |
|---------------------|------------|-----------------|
| 市 예산사업만 수행시 | 10.8억원의 손실 | 21.7억원의 재정 절감 |
| 市 예산사업과 신규 수익사업 수행시 | 25.6억원의 흑자 | 58.1억원의 재정 절감 |

- 그러나 이후 의회 보고,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수익사업의 문제점이 제기되자, 서울시는 위에 제시된 사업은 “재단이 추진가능한 사업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이라 하는가 하면, “재단 추진 과제에서 수익사업을 제외키로 하였으며, 향후 수익사업에 대한 실행가능성이 확보되는 시점에 별도 논의를 거쳐 사업시행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 하여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 바, 수익사업을 둘러싼 이러한 혼선은 타당성 검토 부족에 기인하며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수익사업 실패를 떠올리게 하는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한편, 재단설립에 따른 효과 분석의 타당성 부족 지적에 대해 서울시는 “관광재단 설립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업”이라 하며 타당성이 부족함을 인정하였음³⁾.

- 위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익사업을 실행하지 않고 市 예산사업만 수행한다면 10.8억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비용편익비율(B/C)은 1.0 미만이 될 것이며, 따라서 “주식회사 체재 대비 5년간 21.7~58.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도 허구가 될 것임.

2)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계획(2017.4.) p. 13

3) 이해경 시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답변

- 한편 행정자치부는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협의 검토결과”(제2차)에서 검토의견을 통해 (i) 서울시에 대한 예산 의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여 자체적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며, (ii) 출자에서 출연으로 기관 형태를 바꾼다고 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단 전환으로 주식회사 체제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③ 재단인가 공사인가

- 서울시는 관광환경 변화에 맞춰 공익성이 강화된 조직으로 형태 전환이 필요하고 관광진흥기관으로서 최적화된 조직형태인 출연기관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나,

관광사업⁴⁾은 「지방공기업법」의 (임의)적용사업⁵⁾이며 「출자출연법」에서 말하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으므로,

관광진흥기관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의 문제라 할 수 있을 뿐, 관광진흥기관으로서 최적화된 조직형태가 출연기관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

실제로 “인천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보고서(2015.1.)”

4)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5)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행정자치부)

에서는 정부의 방침 하에 자율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지방공사형을 최적의 형태로 판단하였음.

- 한편 문화재단의 성격이 강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과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광진흥을 위해 (지방)공사 형태로 운영 중이며, 서울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의 기준년도인 2015년도의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의 당기순이익이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음.

- 대부분의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서울시만 재단으로 설립하는 것은 서울시 예산, 즉,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여 경영상의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지방공기업법」의 취지와 타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공사로 설립하여 서울시민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지에 대하여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⁶⁾.

- 서울시는 전담기구를 공사로 할 경우 관광사업을 통해 경상경비 50%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단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관광사업의 구조적 문제가 아니라 관광 진흥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의 발굴과 위탁사업, 그리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볼 수 있음(붙임3. 행정자치부 제1차 협의 결과 검토의견)

6) 행정자치부의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협의 검토결과”도 “관광사업의 경우 지방공기업의 임의적 용사업과 지방출자·출연법의 사업범위 중복으로 (재단으로) 설립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5) 신 조직 설립과 구 조직 해산에 따른 절차상 문제

- 새로운 전담기구의 신설은 기존 전담기구의 해산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재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대표이사가 건강상 이유로 갑자기 사임⁷⁾하고 직제규정 제13조에 따라 본부장이 직무를 대행(정관 제38조제2항도 직무대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함.
- 「상법」 제386조제1항⁸⁾과 제389조제3항⁹⁾에 따르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로 하여금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대표)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는 바(퇴임이사의 법리), 대표이사가 사임한 퇴임이사가 회사 해산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를 의결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음.

퇴임이사에게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있는 바, 긴급처리권은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업무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인정 여부를 가늠해야 하고,

퇴임이사는 현상유지적인 업무만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후 회사 청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

7) 판례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이사 사임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대표이사 권한을 대행할 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함

8) 제386조(결원의 경우) ①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

9) 제389조(대표이사) ③제208조제2항, 제209조, 제210조와 제386조의 규정은 대표이사에 준용한다.

(갑설), 퇴임한 이사도 회사 해산을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의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을설)가 있는 바,

어느 견해에 의하든 퇴임이사가 법이 인정하는 권리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성실한 의무의 이행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퇴임이사에게는 권리행사도 인정되지 않을 것임.

(6) 타당성 관련 종합의견

- 급변하는 관광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울관광 진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공성이 강화된 관광진흥기관의 설립·운영이 필요하며 그것이 재단이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지만,

서울관광 진흥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현 전담기구를 해산하고 신 전담기구의 설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서 요구하는 사업의 적정성, 적절한 사업 수행 방식, 주민·지역경제·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사료됨.

- 한편, 관광진흥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출연금 위주로 사업을 운영할 경우 서울시의 재정지출이 계속 증가할 우려가 있는 바(행정자치부 의견),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다양한 수익사업의 개발과 주기적 경영실적 분석을 통해 사업을 조정할 필요”¹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수익사업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여 “수익사업을 추진과제에서 제외”¹¹⁾할 경우 비용편익비율(B/C)이 1.0 미만인 되어 재단 신설의 실익이 없을 것임.

- 「출자출연법」 제20조¹²⁾에 따르면 출자기관에는 출자금을, 출연기관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주식회사에서 재단으로 전환하지 않고 매년 예산 편성 및 교부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금도 지원할 수 있음(단, 보조금은 운영비로는 쓸 수 없음).

따라서 출자금이든 출연금이든 재정지원은 서울시의 의지의 문제이지 어느 형태로 지원을 하느냐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며, 현재 민간자본이 전혀 없는 서울시 100%의 주식회사 형태로 공익사업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음.

- 출연금은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집행 후 회수되지 않는 비용이나, 출자금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의

10) 행정자치부 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협의 검토결과(2차)

11) 서울관광재단 설립 관련 2차회의 자료

12)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지분을 취득하면서 지급하며 배당이나 지분의 매각에 의해 회수가 가능함.

즉, 출연기관의 출연금은 사실상 운영보조금의 역할을 하므로 비용으로 사용하면 그대로 소멸되어 회수가 불가능하나, 출자기관의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어 운영비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업비로 사용하면 수익을 발생시켜 이익회수가 가능하여 시민 세금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따라서 출자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음.

- 한편, 서울시가 새로운 전담기구를 출연기관인 재단으로 설립해야 한다는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무리한 논리 전개를 하는 바,

“(가칭)서울관광진흥재단 설립 계획(2017.4.)”에서 “행자부는 경기관광공사 지속 결손으로 출연기관 전환 명령(16년 1월)”이라고 하고 있으나, 실제 행정자치부의 개선명령¹³⁾ 내용은 “관광정책개발 및 시·군의 컨트롤타워역할 등 공공성 기능을 강화하고 독립채산의 기반을 마련하되, 신규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공단¹⁴⁾으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라는 것이었으며,

“한국관광공사(KTO)도 기존 사업기관에서 진흥기관으로 역할 변화 중”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최고 최대의 관광진흥기관인 KTO가 수익사업에만 매달리다가 뒤늦게 관광진흥이라는 공익목적으로 방향을 선회한 듯한 왜곡된 표현임.

13)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경영개선명령

14) 공사/공단은 투자기관, 주식회사는 출자기관, 재단은 출연기관으로 분류됨(타당성용역보고서 53면)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재단의 법적 성격과 기능(안 제1조에서 안 제4조까지)

- 동 조례안은 서울관광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18개 조에 걸쳐 목적, 설립, 재단의 사업, 정관, 이사회, 출연금, 기금,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등을 규정하고 있음.

<표2>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조 | 조제목 | 조 | 조제목 |
|------|------------|------|------------------|
| 제1조 | 목적 | 제11조 | 출연금 및 기금 |
|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제12조 | 운영재원 등 |
| 제3조 | 설립 | 제13조 | 수익사업 |
| 제4조 | 재단의 사업 | 제14조 | 사업연도 |
| 제5조 | 정관 | 제15조 | 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
| 제6조 | 임원 | 제16조 | 업무의 위탁 및 대행 |
| 제7조 | 임원의 직무 | 제17조 | 지도·감독 |
| 제8조 | 이사회 | 제18조 | 공무원의 파견 |
| 제10조 | 기본재산의 조성 | 부칙 | |

-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재단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들의 체계와 규정들이 거의 유사한 편인데 본 조례안 역시 타 재단의 조례와 타 관광공사 내용을 대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조례안 제1조는 재단의 목적을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규정하고 있고 제3조에 따르면 서울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고 함)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호에 의해 국제회의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서울특별시 관

광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임.

또한 법적 성격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산하의 출연기관에 해당되어 「출자출연법」 제4조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을 따르도록 함.

- 조례안 제4조에서는 재단의 사업은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15)의 수행중인 대부분의 사업에 대하여 각 호에 구체적으로 예시하면서 제13호를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라 규정하여 사실상 재단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8호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 및 협력지원’의 경우는 2007년 개정된 ‘경기관광공사 제19조(사업)’와 2015년 제정된 ‘인천관광공사 제18조(사업)’의 내용을 참고한 것으로 현재 관련 사업은 전무하며, 서울시에서도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이 없는 바, 추후 개정을 통해 규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안 제4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략) 8.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 및 협력지원 | 제4조(재단의 사업) ----- ----- 1. ~ 7.(제정안과 같음) <삭제> |
| 9. ~ 13. (생략) | 8. ~ 12. (제정안 제9호 ~ 제13호와 같음) |

15)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마케팅 및 관광홍보사업 ~ 8. 기타 회사의 목적과 관련되는 사업

(2) 재단의 조직과 재정(안 제5조에서 안 제15조까지)

- 「출자출연법」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기관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는 목적, 명칭, 그 밖에 재단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출자출연법」 제8조16)(이하 ‘법’이라고 함)에서 기관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따른 것임. 다만, 2017. 7. 26. 시행된 「출자출연법 시행령」 제9조17)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제2항18)의 경우 법인의 정관 개정, 기본재산 처분,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 설립된 여러 재단조례(표3)를 살펴본 바, 대부분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상 재단 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는 법인의 운영 독립성·자주성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지방의회의 사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

-
- 16)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목적 ~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17)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정관 기재사항) 법 제8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사채(社債)의 발행
 - 2. 공고의 방법
 - 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 18)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정관)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재'를 '기록'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표3> 타 재단의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에 관한 규정 현황

| 디자인재단 | 서울문화재단 | 50플러스재단 | 서울디지털재단 |
|--|--|--|---|
| <p>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및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p>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p>제5조 (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2. 이사회에 관한 사항 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p>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p>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p>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p>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공고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p>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

<안 제5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5조(정관) ① ----- ----- <u>기록</u> -----. |
| 1. ~ 11. (생략) | 1. ~ 11.(제정안과 같음) |
| <u><신설></u> | <u>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u> |
| <u>12. (생략)</u> | <u>13. (제정안 제12호와 같음)</u> |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u>기재사항</u>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u>또한 같다.</u>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u>기록사항</u>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u>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u> |

- 조례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임원의 구성과 임원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기관별 형태와 특성 및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기관에서 정하도록 한 법 제9조19)의 취지에 부합하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 조례안 제8조의 이사회, 제9조의 직원은 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정하도록 한 법 제1520)조에 따른 것으로 재단의 민주적 운영과 전문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조례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재단의 기본재산 출연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재원과 사업계획서·결

19)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20)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산서 제출규정 등은 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15조제1항의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제2항1호의 ‘의한’을 ‘따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안 제15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u>변경하고자 하는</u>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 ----- ----- <u>변경하려는</u> ----- ----- |
| ② (생략) | ② (제정안과 같음) |
| 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u>의한</u> 재무회계 결산서 | 1. ----- ----- <u>따른</u> ----- |
| 2. (생략) | 2. (제정안과 같음) |

(3) 사무의 위탁과 지도·감독(안 제16조에서 안 제18조까지)

- 조례안 제16조에서는 서울시가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향후 위탁사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조례안 제17조의 지도와 감독에 관한 규정은 법 제25조²¹⁾와 법

21)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6조²²⁾의 규정을 반영한 것이며, 공무원 파견에 대한 조례안 제 18조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²³⁾를 따르고 있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수정하고, 제2항에서 ‘제17조’는 이미 그 조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안 제17조 수정의견>

| 제 정 안 | 수 정 의 견 |
|---|---|
|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u>자로 하여금</u>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17조(지도·감독) ① ----- ----- ----- <u>사람에게</u> ----- -----. |
| ② 시장은 <u>제17조제1항에</u> 따라 보고된 예 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② ---- <u>제1항에</u> ----- ----- ----- -----. |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2)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23)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4) 부칙규정

- 제정안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가 청산절차를 거친 뒤 설립·운영 근거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는 것임.

(5) 수정의견 종합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략) <u>8.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 및 협력지원</u> 9. ~ 13. (생략) | 제4조(재단의 사업) ----- ----- 1. ~ 7.(제정안과 같음) <u><삭제></u> 8. ~ 12. (제정안 제9호 ~ 제13호와 같음) |
|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기재</u> 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u><신설></u> <u>12. (생략)</u> | 제5조(정관) ① ----- ----- <u>기록</u> ----- 1. ~ 11.(제정안과 같음) <u>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u> <u>13. (제정안 제12호와 같음)</u> |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u>기재사항</u>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u>또한 같다.</u>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u>기록사항</u> 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u>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u> |

| | |
|---|--|
| <p>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u>변경하고자 하는</u>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생략)</p> <p>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u>의한</u> 재무회계 결산서</p> <p>2. (생략)</p> | <p>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 ----- -----<u>변경하려는</u>----- -----.</p> <p>② (제정안과 같음)</p> <p>1. ----- -----<u>따른</u>-----</p> <p>2. (제정안과 같음)</p> |
| <p>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u>자로 하여금</u>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u>제17조제1항에</u>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p> | <p>제17조(지도·감독)① ----- ----- -----<u>사람에게</u>----- -----.</p> <p>② ---- <u>제1항에</u> ----- ----- ----- -----.</p> |

라.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출자출연법」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면서 서울관광재단의 성격과 특성에 고려하여 재단의 사업, 이사회 등의 규정을 두어 자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시 산하 출연기관인 재단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들의 체계와 규정들이 거의 유사한 편인데 본 조례안 역시 타 재단의 조례를 대부분 참고한 것으로 보임.

- 조례안 규정들이 대부분 법체계와 부합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기존 출자기관을 해산하고 재단을 신설하는 방법이 필수적인지 여부, 그리고 공청회 및 ‘서울관광재단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 협의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함²⁴⁾.

4. 질의 및 답변요지

문 : 서울관광재단으로 꼭 설립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 : 관광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이 있음. 이는 관광산업의 투자자보다 대부분 다른 수익자들이 돈을 버는 구조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상비의 50% 정도는 수익을 내도록 하는 공사보다 공공적인 기능을 가진 재단에서 민간과 격리되지 않고 민간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역할을 하는게 재단이라고 생각함.

문 :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가

답 : 조례안이 확정된 이후 제출하는게 일반적이거나 2018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는 시점이 11월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출연금 형태로 할 것인지 혹은 서울시 본청에 있는 예산으로 대행사업 형태로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에 대해 시기가 맞물려 있는 상황으로 제출하게 되었으며, 일반적인 절차는 아님을 인정하며 다음에 시정하도록 하겠음.

문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대표가 공석인 상태에서 본부장 대행체제 하에 의사결정의 한계에 대해 법적 검토는 이루어졌는가, 상법상 대표이사 부재 시 대행권자는 현상 유지적인 업무만이 가능하고 법인의 해산과 설립이 일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음.

답 :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를 청산하고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앞둔 상황에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정관 규정에 의해 대표이사가 공석이라도 선임 본부장과 이사회의 구성원들로 인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문 : 서울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이며 그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답 : 약 390억 원으로 2017년 예산을 근거로 글로벌마케팅 사업과 MICE 사업 등이 이관예정이며, 설립타당성 용역에서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디스커버 서울패스, 서울 플랫폼을 활용한 광고유치, 남산예장자락 공원화 관련해서 예산 추계를 하였음.

문 : 설립타당성 용역 결과에서 제시된 수익사업은 실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선하거나 일부 사업은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답 : 수익사업에 집중시 민간업체와 갈등이 초래되고, 공익적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업체를 지원하는 공익적 기능이 강화가 필요하며, 용역에서 제시된 수익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문 : 설립타당성 용역에서 제시한 B/C 분석에 대해 경제적인 효과를 계량화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힘들다고 인정하지 않았는가.

답 : 사업의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하고 예상과 전망에 따라

조직을 만들어나가야 된다고 보며 수익사업이 완벽하여 B/C분 석이 나온다는 것은 닭과 달걀의 논쟁이라 생각됨.

문 :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한 이후 관광체육국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답 : 시는 관광정책 기획·조정 및 제도개선, 관광인프라 확충 및 관광환경 개선, 인증·규제 등 관광행정기능 관련 업무를 하고 재단은 해외마케팅, MICE 관련 업무 및 안정화된 관광사업 집행 기능을 수행할 것임.

문 : 고용승계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나 사업 계약직의 정규직화와 서울관광마케팅의 실패에 따른 재단 전환인 만큼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분들까지 고승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답 : 현행 비정규직 업무 중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서는 '19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추진하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정규직 채용방식을 적용할 것이며,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유사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방향을 결정할 계획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수정안의 요지

안 제4조제8호는 현재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 정관에 기록해야 할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 제5조제2항은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기본재산 처분,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인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1971 |
|----------|---------|

제안연월일 : 2017년 11월 23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4조제8호는 현재 서울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된 사업이 없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5조에서 정관에 기록해야 할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안 제5조제2항은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기본재산 처분,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정관에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1항제12호)
- 정관에 기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소관상임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2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수정하여 정리함(안 제5조, 제15조, 제17조)

3. 참고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8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9호에서 제13호를 제8호에서 제12호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기재”를 “기록”으로 한다.

같은 조 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2항 중 “기재사항”을 “기록사항”으로 하고, “또한 같다.”를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제1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 중 “자로 하여금”을 “사람에게”로 한다.

안 제17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에”를 “제1항에”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7. (생략) 8.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 및 협력지원 9. ~ 13. (생략) | 제4조(재단의사업) ----- -----. 1. ~ 7. (제정안과 같음) <삭제> 8. ~ 12. (제정안 제9호 ~ 제13호와 같음) |
|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11. (생략) 12. (생략) | 제5조(정관) ① ----- -----기록-----. 1. ~ 11. (제정안과 같음)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제정안 제12호와 같음) |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
|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 ----- ----- ----- -----변경하려는-----. |
| ② (생략) 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 2. (생략) | ② (제정안과 같음) 1. ----- -----다른----- 2. (제정안과 같음) |
|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 | 제17조(지도·감독)① ----- ----- -----사 람에게-----. ② --- 제1항에----- |

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의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재단은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광진흥기관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국제회의 전담조직으로 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
2.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3.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 육성 지원
4. 관광정보 및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5. 관광객 편의 및 관광여건 개선
6. 관광시장 조사·연구·컨설팅 및 정보 제공
7. 국내·외 유관단체 간 관광교류협력 지원

8.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9. 관광기업 육성 및 지원
10.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업무
12.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업무

제5조(정관) ① 재단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5.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정관의 기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고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시장이 임면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 감사를 제외한 임원의 임면과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 특정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

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제10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출연금 및 기금)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6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관광진흥과 관련된 사무를 효

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7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시의 회계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조례 제4587호 「서울특별시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서울관광마케팅주식회사의 청산종결등기일부터 폐지한다.